1,2- 디클로로프로판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

2021. 10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: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직업환경보건센터 천태영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김정원
- 제·개정 경과
- 2021년 8월 산업의학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 규격 및 자료
- Amoore JE; Hautala E: Odor as an aid to chemical safety: odor thresholds compared with threshold limit values and volatilities for 214 industrial chemicals in air and water dilution. J Appl Toxicol 3(6):272 90 (1983)
- 정규철, 산업중독편람, 신광출판사, 1995
- 정경숙, 연구보고서 1,2-디클로로프로판 등 세척제 취급 실태조사 및 건 강모니터링 체계 구축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17
- 한국산업안전공단, KOSHA GUIDE H 147 2020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, 2020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20-산업안전보건연구-35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.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지침. KOSHA GUIDE H-82-2012
-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(보건 조치)
-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(유해인자의 분류기준)
-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(유해인자의 유해성·위험성 평가 및 관리)
-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(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)
-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(작업환경측정)
-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(특수건강진단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(보건기준) 제1장(관리대상 유해물질 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)
-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48호(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)

○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 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1년 10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1,2- 디클로로프로판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9조(보건 조치), 제104조(유해인 자의 분류기준), 제105조(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평가 및 관리), 제106조(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)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3 편(보건기준) 제1장(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)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에서 1,2- 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거나 1,2- 디클로로프로판이 발생하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공정이 있는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1,2- 디클로로프로판에 의한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,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및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 등이 1,2- 디클로로프로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, 관리하는 과정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특별관리물질"이란 법「시행규칙」별표18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, 생식세포 변이원성, 생식독성 물질(Carcinogenic, Mutagenic or Reproductive toxic agents, CMR)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

H - 213 - 2021

말한다.

- (나) "증상"이란 질환 또는 환자 상태의 주관적 증거로 환자가 인식하여 직접 호소 하는 상태나 모양을 말한다.
- (다) "징후"란 어떤 질환의 존재가 겉으로 나타내는 낌새로 환자가 의사에게 알려주 거나 의사가 관찰 또는 조사하여 얻을 수 있는 질환의 객관적 증거를 말한다.
- (라) "검사소견"이란 의사가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의학적 견해를 말한다.
- (2) 이 지침에 사용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술된 정의를 따른다.
- (3) 그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안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, 고용노동부 고시,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1.2- 디클로로프로판의 물리화학적 성상1)

1.2-디클로로프로판의 물리화학적 성상은 〈표 1〉과 같다.

1,2-디클로로프로판은 클로로포름과 유사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인화성, 유동성 액체이다. 냄새 서한도는 0.25 ppm으로 보고되었다.

¹⁾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20-산업안전보건연구원-351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 3권 유해인자별 건강장해, 유기화합물-22 1,2디클로로프로판, p.102

<표 1> 1,2-디클로로프로판의 물리화학적 성상

CAS No	78-87-5	분자식	$C_3H_6Cl_2$
분자량	113	비중	1.155
녹는점	−100.4 °C	꿇는점	96.4℃
증기밀도	2.5	증기압	2.7 mmHg (20℃에서)
인화점	13-15℃	폭발한계	3.4-14.5 %
모양	무색의 액체	냄새	클로로포름과 비슷한 냄새 냄새 역치: 50 ppm
기타	가연성이 높고 물에 불용성이다.강한 산화제, 분말 알루미늄과 접촉 시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이 있다.		

5. 1,2-디클로로프로판의 노출 위험이 높은 업종 또는 작업의

1,2-디클로로프로판에 노출위험이 큰 업종 또는 작업은 〈표 2〉와 같다.

²⁾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20-산업안전보건연구원-351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 3권 유해인자별 건강장해, 유기화합물-22 1,2디클로로프로판, p.102

<표 2〉 1,2-디클로로프로판 노출위험이 높은 업종 또는 작업

구 분	업종 또는 작업	비고
1,2-디클로로프로 판 원액 또는 1,2-디클로로프로 판 함유제품 생산업종	ㅇ 세척제, 산업용 용매, 실리콘 용매제	
1,2-디클로로프로 판 원액 또는 1,2-디클로로프로 판 함유제품 취급업종	 기계/금속 산업, 전기/전자 산업, 자동차 산업, 정밀기기산업, 유리 및 광학 산업, 표면 처리 및 도금산업, 기타 산업(플라스틱, 고무, 화학, 인쇄, 화장품등) 주요취급공정: 세척, 탈지, 코팅, 인쇄 	

6. 1,2-디클로로프로판의 체내 작용기전

6.1 흡수

1,2-디클로로프로판은 흡입 및 경구 노출 시 빠르고 광범위하게 흡수된다. 피부 흡수에 대한 속도 및 정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.

6.2 대사

1,2-디클로로프로판의 주요 대사 경로는 C-position이 산화된 뒤 glutathione 결합이 mercapturic acids(N-acetyl-S-(2-hydroxypropyl)-L-cysteine, N-acetyl - S-(2-oxopropyl)-L- cysteine, N-acetyl-S-(l-carboxyethyl)- L-cysteine)를 형성한다. 또한 젖산과 결합하여 이산화탄소와 acetyl Co-A를 형성 할 수 있다.3)

³⁾ ATSDR; Toxicological Profile(2020) Available: http://www.atsdr.cdc.gov

H - 213 - 2021

6.3 배설

1,2-디클로로프로판은 소변 또는 폐를 통해서 배출되며, 섭취 시 대변으로 소량 배출된다. 생물학적 지표로는 소변 중 1,2-디클로로프로판(작업 종료 시) 180 µg/L이다.4)

7. 1,2-디클로로프로판에 의한 건강영향

급성 영향의 표적장기는 중추신경계, 조혈기계 (용혈성 빈혈), 간, 신장이고, 만성 영향은 담관암이다.5)

7.1 급성 영향

(1) 간담도계: 피로, 발열, 전신 무력감, 황달

(2) 신경계: 두통, 구역질, 현기증, 식욕저하, 졸림 등

(3) 조혈기계 : 코피, 용혈성 빈혈

(4) 신장 및 비뇨기계 : 혈뇨, 소변량 감소

(5) 호흡기계 : 흉부의 불편함, 숨쉬기 어려움, 기침과 같은 상기도 자극 증상

(6) 소화기계 : 오심, 구토, 복통

⁴⁾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20-산업안전보건연구원-351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 3권 유해인자별 건강장해, 유기화합물-22 1,2디클로로프로판, p.102~p.103

⁵⁾ 정경숙, 연구보고서 1,2-디클로로프로판 등 세척제 취급 실태조사 및 건강모니터링 체계 구축, 한국산 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보건연구원, 2017, p.232

H - 213 - 2021

7.2 만성 영향

(1) 간담도계: 담관암으로 인한 황달, 체중감소

(2) 신경계: 기억력감퇴, 정동장애, 감각 및 운동신경의 반응성 감소6)

7.3 발암성

1,2-디클로로프로판은 담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국제암연구소(IARC) 발암성물질 분류상 Group 1(인체 발암성 물질)로, 미국산업위생가협회(ACGIH)에서는 Group A4 (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)로 평가하고 있다.

8. 1,2-디클로로프로판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

8.1 건강진단

8.1.1 건강진단을 할 때 고려사항

- (1) 1,2-디클로로프로판 노출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 및 주기적 건강진단의 주요 항목은 간기능, 신장기능, 중추신경계 증상, 조혈기계 증상, 담관암 소견이다.
- (2) 간기능 : AST, ALT, y-GTP 등으로 간독성을 확인할 수 있다.
- (3) 신장기능 :소변검사를 시행하여 급성신부전을 확인할 수 있다.
- (4) 중추신경계증상 : 신경계 증상 문진을 시행하여 확인할 수 있다.
- (5) 조혈기계 : 혈색소량, 혈구용적치, 적혈구수 등의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.

⁶⁾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20-산업안전보건연구원-351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 3권 유해인자별 건강장해, 유기화합물-22 1,2디클로로프로판, p.103

H - 213 - 2021

(6) 담관암 : 총빌리루빈, 직접빌리루빈, 간담도계 초음파 검사 등으로 검사할 수 있다.7)

8.1.2 건강진단 주기8)

- (1) 1,2-디클로로프로판에 노출되는 작업부서 전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.
- (2)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제 2항 제2호에 따라 특수·수시 또는 임시 건 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가 특수건강진단 주기단축 여부를 정한다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,2-디클로로프로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1/2로 단축하여야 한다.
 - (가) 당해 건강진단 직전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1,2-디클로로프로판 농도가 노출기준 이상인 경우
 - (나) 1.2-디클로로프로판에 의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
 - (다) 건강진단 결과 1,2-디클로로프로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 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
- (3) 배치 전 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되, 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될 예정이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⁷⁾ IARC Monographs Volume 110: Perfluorooctanoic Acid, Tetrafluoroethylene, Dichloromethane, 1,2-Dichloropropane, and 1,3-Propane Sultone

⁸⁾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20-산업안전보건연구원-350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 2권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, 유기화합물-22 1,2디클로로프로판, p.45-p.46

H - 213 - 2021

- 8.1.3 건강진단 항목9)
 - (1) 1차 검사항목
 - (가)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
 - (나) 과거병력 조사 : 주요 표적 장기와 관련된 과거 질병력 조사
 - (다) 임상진찰 및 검사 : 간·신장·조혈기계·중추신경계·담관암에 유의하여 진찰
 - ① 간담도계: AST(SGOT) 및 ALT(SGPT), y-GTP
 - ② 비뇨기계: 요검사 10종
 - ③ 조혈기계: 혈색소량, 혈구용적치, 적혈구수, 백혈구수, 혈소판수, 백혈구 백분율
 - ④ 신경계: 신경계 증상 문진,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
 - (라)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: 소변 중 1,2-디클로로프로판(작업 종료 시) (180 ug/L)
 - (2) 2차 검사항목
 - (가) 임상검사 및 진찰
 - ① 간도담계: AST(SGOT) 및 ALT(SGPT), y-GTP, 총단백, 알부민, 총빌리루빈, 직적빌리루빈, 알카리포스파타아제, B형간염 표면항원, B형간염 표면항체, C형간염 항체, A형간염 항체, CA19-9, 간도담계 초음파 검사

⁹⁾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20-산업안전보건연구원-349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 1권 특수건강진단 개요, p8

H - 213 - 2021

② 비뇨기계: 단백뇨정량, 혈청, 크레아티닌, 요소질소

③ 조혈기계: 혈액도말검사, 망상적혈구수

④ 신경계: 신경행동검사, 임상심리검사, 신경학적 검사

8.1.4 직업환경의학적 평가10)

(1) 1,2-디클로로프로판에 의한 건강관리 구분은 〈표 3〉과 같다.

¹⁰⁾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20-산업안전보건연구원-349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 1권 특수건강진단 개요, p9

<표 3> 건강관리 구분

코드		건강구분
A		건강관리상 이상소견이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, 사후관리
		가 필요 없는 근로자(건강한 근로자)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
С	C_1	근로자 (직업병 요관찰자) ※판정기준: 다음의 첫째 또는 둘째에 해당하는 경우 첫째, (1) 임상검사결과 참고치를 벗어나거나, 임상진찰결과 간, 비뇨기계, 조혈기계, 중추신경계 등의 이상증후를 보이고 (2) 작업장 기중농도, 노출기간, 취급방법 등을 고려할 때, 1,2-디 클로로프로판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(3) D1에 해당되지 않고 관찰이 필요한 경우 둘째,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1,2-디클로로프로판(작업
	C_2	종료 시)(180ug/L)을 넘는 경우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(일반 질병 요관찰자)
D_1		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(직업병 유소 견자)
		※ 판정기준 : (1) 임상검사 또는 임상 진찰결과 용혈성빈혈 등 조혈기장애, 간기능 부전, 신기능부전, 중추신경계 장해(의식변화, 혼수, 보행장해 등), 담관암 등이 있고 (2) 작업장 기중농도, 노출기간, 취급 방법,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등을 고려할 때, 1,2-디클로로프로판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
D ₂ 일반 견자)		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(일반질병 유소 견자)
R		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(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)

(2)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 기준은 〈표 4〉와 같다.

<표 4>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 기준

구분	업무수행 적합 여부 내용
가	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
나	일정한 조건(환경개선, 보호구착용,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)하 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
다	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(건강상 또는 근로 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 복귀 가능)
라	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애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

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을 내릴 때 일정한 조건이나 건강상 또는 근로 조건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조치사항(사후관리내용)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를 할 때는 혈액 질환 (빈혈 및 조혈기계 질환자), 만성 간 질환, 신부전, 담관암 등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평가한다.

8.1.5 수시건강진단을 위한 참고사항11)

근로자가 혈액학적 이상, 급성 신경학적 장해(의식변화, 혼수, 보행장해 등), 급성 간부전 및 신부전 등의 증상 및 증후를 보여, 사업주가 수시건강진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한 경우 건강진단기관의 의사는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, 수시건강진단의 필

¹¹⁾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20-산업안전보건연구원-350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 2권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, 유기화합물-22 1,2디클로로프로판, p.46

요성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자문 결과서를 통보하여야 한다.

8.2 사후관리12)

- (1) 사후관리조치 판정은 〈표 5〉와 같다.
- (가)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는 사후관리를 <표 5>와 같이 조치한다. 이 경우 사후관리 조치를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다.

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 필요없음 0 건강상담() 1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() 추적검사 ()검사항목에 대하여 20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 3 요 근무 중()에 대하여 치료 4 근로시간 단축() 5 작업 전환 () 6 7 근로제한 및 금지 ()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확진 8 의뢰 안내 9 기타 ()

〈표 5〉 사후관리조치 판정

- (나) 사업주는 의사가 제시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지정한 검사항목을 받게 한다.
- (다)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근로자 건강진단을 통하여 발견된 직업병 유소견자 중 직업병 확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요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산재 요양신청서를 작성한다.

¹²⁾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20-산업안전보건연구원-349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 1권 특수건강진단 개요, p10

H - 213 - 2021

(2) 배치전 건강진단에서는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만을 실시한다.

8.3 직업병의 진단

8.3.1 1.2-디클로로프로판 노출과 업무관련성 평가

- (1) 임상검사결과 참고치를 벗어나거나 간담도계, 비뇨기계, 조혈기계(용혈성빈혈), 중추신경계(의식변화, 혼수, 보행장애 등)의 이상소견 혹은 담관암 등이 있다.
- (2) 작업장 기중농도, 노출기간, 취급방법,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등을 고려할 때, 1,2-디클로로프로판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1,2-디클로로프로판에 의한 직업병으로 의심할 수 있다.

9. 응급조치

9.1 응급조치13)

눈이나 피부에 접촉된 경우 일차적인 응급조치는 노출이 일어난 장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1,2-디클로로프로판 취급 작업장 내에 눈 및 피부 세척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하며 1.2-디클로로프로판에 노출되었을 경우 응급조치는 다음과 같다.

9.1.1 눈 접촉

- (1) 1,2-디클로로프로판 용액이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는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는다.
- (2) 세척 후에도 자극이 지속될 경우에는 즉시 의사적인 조치 및 조언을 받는다.

9.1.2 피부 접촉

¹³⁾ 한국산업안전공단, 화학물질정보검색, MSDS, 1,2-디클로로프로판

H - 213 - 2021

- (1) 오염된 의복이나 신발은 즉시 제거하고, 오염된 피부는 적어도 15분 동안 물로 씻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.
- (2)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한다.
- (3)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,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않는다.

9.1.3 흡입

- (1) 다량의 1,2-디클로로프로판 흡입 시에는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시킨다.
- (2) 호흡하지 않을 때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하고, 환자를 따뜻하게 하고 안정을 취하게 하며,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한다.

9.1.4 섭취

- (1) 1,2-디클로로프로판 용액을 삼켰지만, 의식이 있을 때는 즉시 다량의 물을 먹여서 토하게 한다. 이때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머리를 낮춘다.
- (2) 의식 불명의 사람에게는 토하게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게 하고, 머리를 옆으로 돌려 기도 흡입을 예방하며,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한다.

9.1.5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
- (1) 노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한다.
- (2) 접촉·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다.

H - 213 - 2021

(3)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한다.

10. 1,2-디클로로프로판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

10.1 노출기준

10.1.1 작업환경 기중 노출기준

우리나라의 1,2-디클로로프로판 노출기준은 10 ppm이지만 발암성 물질이므로 그 이하에서 가능한 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노출 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.

10.1.2 생물학적 노출기준

1,2-디클로로프로판은 흡입 및 경구 노출 시 빠르고 광범위하게 흡수되므로 작업환경 중 노출기준보다 생물학적 지표가 의미가 크다. 당일 작업 종료 시 채취한 소변에서 측정한 1,2-디클로로프로판 180 $\mu g/\ell$ 를 생물학적 노출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.¹⁴⁾

10.2 작업관리15)

10.2.1 작업관리 방법

1,2-디클로로프로판이 발생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작업관리 방법을 마련하여 작업 근로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게 한다.

(1) 작업 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,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 전보건 조치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.

¹⁴⁾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20-산업안전보건연구원-351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 3권 유해인자별 건강장해, 유기화합물-22 1,2디클로로프로판, p.104

¹⁵⁾ 한국산업안전공단, KOSHA GUIDE H - 147 - 2020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, 2020, p.3-p.4

H - 213 - 2021

- (2)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1,2-디클로로프로판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, 1,2-디클로로프로판의 취급상 주의사항,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,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을 게시한다.
- (3) 근로자는 전용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, 작업복과 개인 의복은 분리 하여 보관하다.
- (4)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음식물의 저장, 섭취, 흡연 등을 금지한다.
- (5) 발생되는 폐기물 및 청소 걸레 등은 지정된 밀폐 장소에 보관하고,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- (6) 작업장에는 손과 피부를 씻을 수 있는 세척설비를 갖추어야 하며, 옷이나 피부에 부착되어 1,2-디클로로프로판을 다른 장소로 비산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욕 및 세탁설비 등도 설치한다.

10.2.2 교육

1,2-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는 근로자 및 해당 업무에 배치 예정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한다. 특별안전보건 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- (1)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
- (2) 물리·화학적 특성
- (3) 1.2-디클로로프로판의 독성과 건강장해 예방대책
- (4)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

H - 213 - 2021

- (5) 취급상의 주의사항
- (6)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
- (7) 기계·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
- (8)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
- (9)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
- (10)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(11)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
- (12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

10.2.3 1.2-디클로로프로판의 취급일지 작성

- (1) 사업주는 물질명·사용량 및 재고량, 취급일자, 작업내용, 취급상의 문제점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처리내역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- (2) "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(KOSHA GUIDE H-147-2020)" 에서 제시하고 있는 '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' 양식을 참고한다.

10.2.4 특별관리물질의 고지

(1) 사업주는 1,2-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「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48호)에 따라 발암성(1A) 물질임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H - 213 - 2021

(2) "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지침(KOSHA GUIDE H-147-2020)" 에서 제시하고 있는 '특별관리물질 고지' 양식을 참고한다.

10.2.5 취급시 주의사항

- (1)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 취급하지 않는다.
- (2)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 사용한다.
- (3) 분진, 흄, 가스, 미스트, 증기, 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한다.
- (4)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한다.
- (5) 저지대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중, 공기 중 산소 농도 측정 및 환기를 한다.
- (6) 열이나 스파크, 불꽃에 의해 쉽게 점화되므로 열원, 스파크, 불꽃, 가연성 물질, 점화원과 격리하여 저장해야 한다.
- (7)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고, 용기는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한다.

10.2.6 근로자의 준수사항

1.2-디클로로프로판의 취급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
- (1) 취급 작업 중에는 가동 중인 국소배기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키지 않는다.
- (2) 가능한 한 작업장 내로 발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한다.
- (3)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한다.

H - 213 - 2021

- (4)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한다.
- (5) 기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에 따른다.

10.3 개인보호구

- (1) 1,2-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호흡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인증을 받은 방독보호구를 착용 한다.
- (2) 근로자의 피부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갑은 1,2-디클로로프로판의 피부 흡수를 방지할 수 있는 니트릴, 네오프렌 소재 장갑을 착용한다.
- (3) 작업 특성상 근로자가 피부 보호구의 착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부 보호용 도포 제를 사용하고 작업한다.
- (4) 작업 특성상 1,2-디클로로프로판이 튀어 눈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한다.
- (5) 근로자는 전용의 개인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한다. 매일 깨끗한 것으로 교체하여 작업 전에 착용하고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한다.
- (6) 오염된 개인보호구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밀봉하여 특별관리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.